

제428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7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국방부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상정된 안건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 국방부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강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차관님,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하고 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9월 2일 오전 양 일간 결산심사를 완료해서 그 결과를 9월 2일 화요일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결산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를 토대로 정

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만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방부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10시10분)

○**소위원장 강대식**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나 하고……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 차관님, 군수관리관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군수관리관 안 나왔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출장 갔습니다.

○**부승찬 위원** 목적이 뭐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태평양 지역 군수관계관 회의로 알고 있는데 출장지는 몽골입니다.

○**부승찬 위원** 군수관리관의 태도를 보면요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만도 전체회의 네 차례 불출석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국회의 승인을 받고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군수관리관은 그렇지 않아요. 나 해외출장이니까 출석 못 해……

통보조차도 없어요. 승인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통보조차도 없어요, 국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명확히, 오늘 44개 안건 중에 군수관리관과 관련된, 군수관리국과 관련된 게 11건입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 안 했는데 불출석사유도 없어, 이거 징계감 아닙니까?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요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국방위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징계처리 요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지켜봤었거든요, 그래도 변하겠지. 다른 국장들이나 기관장들도 다 해외출장 가면 찾아옵니다. 그런데 군수관리관은 장관 차관 위에 있는 분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국방부 자체 징계가 안 열리면 저희가 징계안을 올려서 상임위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건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방금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차관께서는 잘 참조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활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요 국방부 소관 결산심사의 경우 총 심사 대상 건수는 44건입니다. 일반회계 39건, 특별회계 2건, 기금 3건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방부 소관 예산을 사업 유형별로 프로그램 단위로 묶어서 4건 내지 5건씩 일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의사결정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사실상 실국별로 심사하게 되면 효과가 큽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연번 1번과 2번은 세입 관련 사항입니다. 2건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연번 1번입니다.

시정요구명 미수납 채권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기타경상이전 수입이고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미수납액이 2014년도에 1009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미수납액 증가 사유는 패소자의 재력 부족 등 사유로 미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2025년도 말까지 국방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채권 관리전산망의 연계를 추진하고 채권추심 관련 기관과 지속 협조하여 미수납액 채권의 수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연번 2번 시정요구명은 불용군수품 매각 관련 제도 정비 필요입니다. 사업명은 기타잡수입이고요.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국방부의 고철 매각 중 사회복지법인과의 수의계약 단가가 현저히 낮고 고철 매각 요건에 사업장 보유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이건 약간 반대되는 의견인데 수의계약 단가만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단체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방부는 고철 매각 지침에 수의계약 당사자의 직접처리 의무를 명시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체결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단가 산정 및 계약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점을 하라는 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방부는 수의계약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존중하여 현장을 반영한 균형 잡힌 고철 매각 제도 운영에 힘쓰라는 제도개선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2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는 상기 2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강선영 위원** 제도개선도 있거든요.

○**소위원장 강대식** 2번 불용군수품 매각 관련 제도 정비 예산은 제도개선도 들어가 있는데 2번은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2번도 수용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직접처리 의무나 수의계약 비중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나 기재부 등의 법리 해석하고 수의계약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이거 지금 제도개선을 하라고 말씀드린 취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굿피플이라는 장애인단체가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고철을 수의계약해서 매각했는데 단가가 싼 것도 싼 건데 문제는 굿피플이라는 데서 수의계약을 하고…… 굿피플이라는 데가 수집을 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이 없어요. 바로 제3의 업체, 다른 업체에 바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이걸 직접 적재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아닌 곳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서 중간에 다시 다른…… 결국 굿피플한테 이익을 준 것 같지만 제3의 업체에 장애인단체만이라는 것 때문에 저가로 매각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 다른 단체로 넘어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를 직접처리 의무를 명시해 달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른 기관과 다 의견을 종합해서 보시고 검토하실 수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잘 알겠습니다. 유관부처와 잘 협의해서 법리 검토 받고 해서 필요 조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저도 강선영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굿피플과 관련돼서 이게 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연결만

하고 그 단체가 낙찰을 받아서 연결만 해요. 거기서 수익을 챙기는 아주 이상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이지만 입찰공고를 내잖아요. 16년인가 그때까지 입찰공고,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입찰공고를 내고 23년에 한번 또 내요 그리고 24년에 안 내고.

그리고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처리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독 이 업체만 특혜,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혜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찰공고나 자격요건에 사업장 보유 여부나 처리 능력 정도는 최소한 정도로 요건에 넣어야 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고 싶네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도 계약이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잘 검토를 하고 또 유관부처 의견도 같이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릴까요?

○**소위원장 강대식** 예,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차관님께 내가 좀 묻고 싶은 것 그리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또 예비역단체, 우리 국가 차원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될 단체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좀 배려하는 것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인데, 이제 시대가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방금 강선영 위원님이나 부승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고 또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건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지금 국방부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납득 가능한 상태인가를 보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배려해 주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배려를 해 주더라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배려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차제에 다른 사안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시정과 제도개선 동시에 채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개선은 균형 잡히게 하지 않은 제도개선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강대식** 제도개선으로?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제도개선과 시정을 2개 다.

○**소위원장 강대식** 2개 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시정도 있고 제도개선도 채택하고.

○**소위원장 강대식** 하나로 정해서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소위원장 강대식** 차관님, 뭐를 원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 둘 다 수용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둘 다 받겠습니까, 하나만 받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둘 다 받아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무관합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2개 다 합니다, 2개 있는 것은. 딱 부러지게 ‘하나로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히려 그게 낫지 뭐 2개 다 받겠다 그러면 앞으로도 2개 있는 것은 2개 다 계속 그렇게 갈 건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필요한 부분은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연번 3번부터 6번까지 4건에 대해서 급여 정책 관한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시정요구명입니다. 자체에 반영 없이 상설 운영하고 있는 T/F장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사업명은 장교인건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방부 조직 및 정원은 자체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되지만 국방부 일부 직위에 대해 한시기구인 ‘TF장’ 직위로 사실상 상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에 감사원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장기간 한시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자체에 정식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효율성 및 합법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그다음 4쪽 연번 4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장교·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의 연례적 조정집행 지양 필요입니다.

사업명은 장교인건비·부사관인건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장교·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은 반복적으로 과소 편성되었고 다른 사업으로부터 조정하여 충당·집행해 왔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장교·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이 매년 대규모로 조정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명퇴 지원인원 예측 정확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연번 5번 시정요구명입니다.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시간외근무 실태 점검입니다.

사업명은 군무원인건비 사업입니다.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은 흔히 말하는 동대장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그 부족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에 비해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지속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가하는 예비전력관리군무

원의 시간외근무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그리고 백선희 위원께서 부대의견도 제출하셨습니다.

그다음 자료 6쪽 연번 6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국외직무파견 신설 시 국회 예산심의 준수 필요입니다.

사업명은 공무원인건비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국방부는 국외직무파견 두 직위를 신설하기 위해 2024년도 중에 다른 세부사업 예산 등을 활용하여 총 3억 원을 집행하여서 목적 외 사용으로 했다는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신규 국외직무파견 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4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합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 견의를 드리겠습니다.

4번은 주의로 견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5번 예비전력군무원 관련되는 사항은 제도개선을 견의드립니다. 6번 국외직무파견 신설 시 국회 예산심의 관련되는 부분은 주의로 견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3번 TF장 제도개선 관련해서 시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시정되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 부분은 우선 행안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렇게 묻는가 하면 사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십년간 이렇게 오고 있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국방개혁추진위·추진단, 그게 계속해서 오다가 지난 정부에서 해체를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개혁실을 해체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개혁실을 해체했는데 지금 단을 또 만든다는 말이에요. 조직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TF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여기서 시정한다고 하고 넘어가겠다는 소리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과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때그때 필요하면 지시하면 그냥 약전에서 다 끌고 와 가지고 쓰고 해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5번에 예비군 동대장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지금 계속 초과되잖아요. 이것 초과를 하는 이유가 과연 정말 시간외근무를 해야 될 정도로 업무가 많아 가지고 초과하느냐, 여기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수급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

분들 이걸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초과할 수밖에 없겠다 하면 그것은 예산으로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추가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반복하는 것을 막아야 될 것이고 부정수급이 있다 그러면 엄벌을 하고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정상적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2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F장 운영하는 문제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빼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될 수도 있지만 업무 특성상 직무값이나 이런 걸 따져 보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 다만 정상적인 부분으로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예비역관리군무원 관련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국방부 해당 사업 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차제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실태를 일제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한시조직 운영과 관련돼서 한기호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그런데 임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제가 직접 입장을 들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지금 현재 군인 정원 중에 16.4% 정도가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무값을 보면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 행안부하고 협조를 하더라도 정식 편제로 반영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늘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국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한시조직이 편제돼서 운영되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무 효율성 측정 그리고 이런 다양한 방안의 측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당장은 용역 연구, 정책 개발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정책개발 연구결과라도 국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10년 넘게 일관되게 지적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정에 따르겠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슨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한 결과 이렇다’ 정도는 그래도 내년 결산할 때는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 임종득 위원님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로잡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국방개혁

실과 국방개혁단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방개혁위원회 김관진 위원장이 있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부위원장인가요, 위원장인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부승찬 위원** 유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국방개혁실은 아예 한시조직이지만 정식 편제같이 놓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방혁신위원회나 국방개혁위원회는 별도 조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언론에 나온 부분을 보고 지금 언급을 한 건데 민간 관련돼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두고 보세요. 국방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지켜볼 겁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실무조직 팀이 안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부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절대 만들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알겠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차관님, 동원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예비군 중대장, 예비군 지휘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 참모·교관 그다음에 학생군사학교동원학부 교관, 동원전력사령부에 있는 참모부 실무자 등이 다 포함된 건데 제가 시정을 해서 그들한테 환수를 조치하거나 과거의 잘못된 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 전우들이고 그분들이 여유 있게 생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한정된 파이라는 국방예산 속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이 비용이 결국은 저는 전방에서 고생하거나 하는 그 사람들한테 못 간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57시간이 되어 있는 제도를 낮춰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수당이 지금 너무, 생길 때마다, 무슨 특기가 생길 때마다 막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과거에 1980년대 1990년대에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을 때 컴퓨터 다루던 전산담당관들 수당 줬거든요. 지금 컴퓨터 안 다루는 사람 없는데 전산담당관들한테 수당이 계속 나가거든요. 없앨 건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수당 등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수당, 옛날에 운전사 하던 사람 특별히 없을 때 운전수당 줬잖아요. 운전수당 지금도 주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그것처럼 수당을 시대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국방부에서 국회에서 ‘함정들 고생한다, 잠수함 고생한다, 항법사들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면 계속 그 수당을 개별적으로 올리니, 제가 제기한 건 뭐냐 하면 위험하냐, 전문자격이 있느냐, 그들이 근무하는 곳이 격오지냐에 맞추어서 수당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생길 때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막 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달라, 전체 범위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제시한 3번 시정, 4번 주의, 5번 제도개선, 6번 주의 이렇게 정부 측 제시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정부 측 의견 따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7쪽입니다.

연번 7번부터 연번 12번까지 6건에 대해서는 급식 및 피복에 관한 항목입니다.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연례적 과다편성 지양 필요입니다.

사업명은 기본급식이고요.

지적사항 보시면 연도별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예결산 현황을 보면 24년도에 30%대의 집행률을 유지하면서 저조하다는 부분이고요, 남은 잔액이 기본급식비 부족분에 모두 활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야전조리병 교육 편성인원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자료 8쪽입니다.

연번 8번, 시정요구명은 급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확인절차 강화 필요입니다.

사업명은 기본급식이고요.

지적사항입니다. 2024년 국군체육부대는 축산물을 납품받았지만 실제 납품은 계약한 납품업체가 아닌 불법 하도급을 통한 타 업체가 납품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식재료 납품 검수 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급식방침에 반영하라는 제도개선 의견과 두 번째 동그라미, 국방부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납품업체 직접납품 여부를 검증할 제도개선 계획을 제시하라는 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방부는 영양사 배치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9쪽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전투식량 유통기한 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특수식량입니다. 전투식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식량이 군 이동 시에 지참되는 일이 발생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전투식량이 유통기한 도래 전에 순환급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폐기되거나 훈련 시 등에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연번 10번, 시정요구명은 특전식량 국방규격 개정 시 조달 가능성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특수식량이고요.

지적사항은 특전식량입니다. 2024년 특전식량 조달사업은 변경된 국방규격을 준수하는 생산업체의 응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러한 개정된 국방규격에 맞출 수 있는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확인 절차 또는 시장조사 등을 내실 있게 거치지 않아서 결국 정상 조달 실패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연구개발된 품목이 적시에 조달될 수 있도록 시장 및 업체의 능력 확인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민간조리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2024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7%로 1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민간조리원의 결원 및 중도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아래쪽에 보시면 특수지근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등 이런 처우개선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 노력과 더불어 특수지근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편성 등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 운용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그다음, 자료 12쪽입니다.

연번 12번 시정요구명은 기본피복 사업의 미집행액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기본피복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본피복 사업의 예결산 현황을 보면 미집행 규모가 2024년도에 352 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집행 중에서 연도별 이전용 현황을 보면 이 사업에서 남은 금액으로 다른 공공요금이나 배상금 부족 등에 충당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 기본피복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기본피복 사업의 예산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미집행 예산액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7번부터 12번까지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다만 두 가지만 추가로 건의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번 사항에서 군부대 영양사를 확대 배치하는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인건비 예산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군부대의 영양사는 식단을 편성하는 제대인 급양대와 사단 보수대 정도에 편성이 돼 있

고 각 취사 단위로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식단을 편성해 주면 취사 단위에서는 단순 취사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수천 명이 되는 영양사를 확대할 경우에는 여기에 또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등의 문제와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번 사항입니다.

군 민간조리원 문제인데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쳐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규 수당 등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학교급식 인원들과 비교했을 때 군 민간조리원은 월 230여만 원의 보수를 받는 반면에 학교조리사들은 280만 원 가까운 돈을 받고 또 군은 하루 세끼를 다 조리에 참가하는 반면에, 학교는 하루 한 끼밖에 하지 않지만 군은 세끼를 다 참석을 합니다 또 격오지에 있고. 이런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쳐우가 열악하니까 채용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 이 얘기는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국민 체력관리 이런 지수 같은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쳐방이 예방 차원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동 쳐방이고 하나는 음식, 식단 쳐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있어서 무기체계라든가 다른 것 다 있지만 군인들에 대한 사기와 체력 이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희 위원 그러면 군인들에 대한 체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식이거든요, 밥 먹는 것. 그래야 체력이 잘 보충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관님 말씀 어떻게 하시나 하면 식단은 누가 짜 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면, 그러면 국방부에 영양사 1명만 있으면 되겠네요? 국방부에 영양사 1명 있고 인터넷으로 쪽 뿌리면 되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희 위원 무슨 개념입니까? 무슨 취지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사단 단위나, 그러니까 부식을……

○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논리대로 하면.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희 위원 왜 아니에요? 짜 주면 각 예하부대에서는 짜 준 대로 요리만 하면 된다면서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부대별 지역적 특성들이 다 있고 부식이 조달……

○황희 위원 이 부대는 이거 먹고 저 부대는 저거 먹어야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지역과 연계된 부식 조달체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황희 위원 그러면 부식 조달체계에 따라서 영양사 배치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래서 한 200여 명의 영양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아니, 지금 사고방식이……

국방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60조 넘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희 위원** 1000억을 운운하세요? 군인들한테 1000억 못 써요? 1000억 못 쓰면 우선은 500억만 쓰시면 되지. 아니, 무슨 60조까지 하면서 돈 500억, 1000억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식자재 관리 누가 해요? 제가 보면 세 가지거든요. 식자재 관리를 누가 하고 식단 관리를 누가 하고 그다음에 그 음식을 조리하고 그 음식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걸 누가 하느냐? 다 한 군데서 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부대별로 민간 위탁된 데는 민간 위탁업체에서 하고 군에서 하는 데는 취사를……

○**황희 위원** 아니, 단위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식자재 관리라든가 식단 관리라든가 이런 걸 따로따로 하냐, 같이하냐 이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건 부대별, 취사 단위별로 합니다.

○**황희 위원** 단위별로, 그 부대 단위가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관리한다는 거지요? 식자재와 식단과 그거를 한꺼번에 한다는 거지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식단은 예를 들면 사단급 이상, 1만 명, 2만 명 단위로 되고 식자재 관리는 납품이 되면 취사 단위별로 이루어집니다.

○**황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8번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대에서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납품업체가 정해졌는데 그 납품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불법적으로 그걸 납품하는데 관리도 안 되고 점검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여기가 이렇게만 적발돼서 그렇지 다른 데서…… 주로 되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나온 것 보면 어떻게 보면 군 식자재 납품하고 이런 데는 통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것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차관님 얘기만 들어 봐도 이 부분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희 위원** 그러니까 군급식 부실하다고 터지면 그때 가서 별 단 장군들 가 가지고 사병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 한 번 먹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 뒤에 몇 년 있다가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지.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요. 군급식 부실하다는 게 반찬 몇 개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세요? 미사일 사고 이런 건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군인들, 20대 장교 와 가지고 밥 먹고 이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장병들의 먹는 문제가 전투력 발휘의 근간이 된다는 중요성은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황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황희 위원** 예.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하나는 차관님의 설명을 제가 대신해 드리고, 하나는 제가 다른 의견 드

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이라는 게, 취사 단위 부대라는 게 개별적으로 취사장을 운영하는 독립중대부터 연대급, 사단급까지 다양한데 사실 법상 지역상생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선한 재료를 조기에 조달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에는 각 군지사 예하 그다음에 사단 단위 예하 급양대가 있고 보수대가 있습니다. 사단 단위에는 보수대 그다음에 군지사 예하에 이런 데는 급양대를 운영해서 거기서 그 지역의 신선한 식자재를 조달하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 연간 1년에 한 번씩 물자보급지시라는 문서를 통해서 개인이 섭취해야 될 소금의 양, 된장의 양, 고추장의 양, 쌀의 양을 다 정해서 일괄로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식자재를 구매하는 지역 단위의 보수대 또는 급양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식자재의 기준을 가지고 식단을 편성해서 그거에 맞춰서 다 내려 주지요. 그렇게 들어오면 통상은 그걸 갖고 온 거를 전처리 단계에서 부대에서 급양담당관과 조리사들이 그걸 처리해 가지고 그다음에 냉장고에 있고요. 매일매일 그날 조리한 것은, 그날 식사 조리한 것, 딱 그 식단을 가지고 72시간 정도 보관해서 식중독 등의 확인 등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합니다. 군인들의 영양 그것도 중요한데 군대는 취사 단위 부대라는 게 정말 중대급부터 시작해서 사단급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개별 단위의 영양사를 다 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게 차관님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납품을 잘못해서 검수를 똑바로 못 한 것은 급양대랑 보수대 담당자들이 잘못한 거니까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적해서 확인해 주시면 황희 위원님 같은 이런 의문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두 번째, 11번 민간조리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이게 문제가 뭐냐? 왜 안 되느냐?

제가 그래서 24년 7월 26일 날 육군 6685부대, 제가 볼 때는 한 2군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대에서의 민간조리원 모집공고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집한 데가 보니까 강원도 화천군 봉오리 2, 사내면 1, 철원군 마현리 1, 보니까 7사단, 15사단이에요. 7사단, 15사단 지역에서 뽑는데 기준이 뭐냐면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그다음 대규모 식당, 150명 이상 조리 유경험자, 관련 업무 근무경력 2년 이상. 그러면서 응시자격이 국방부 공무직근로자인사관리훈령 14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 별금 100만 원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내면에, 철원군 마현리에 왜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이런 민간조리원에 대한 규정을 고쳐 주셔서, 통상 저도 고용해 보면요 거기에 근무하는 부사관들 가족들을 조리사로 채용을 하고 싶은데 이런 규정에 지휘관들이 묶여서 특혜 시비라든지 규정 위반 때문에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조리원 응시자격을 공무원 선발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조리 능력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 성실하게 근무해서 조리를 할 수 있는가 등을 가지고 격오지에서 사람을 뽑아 주시고요.

일반적인 학교에서 280만 원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군대는 전처리 과정을 병사들이 해 주고 세끼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8시간 근무조건 때문에 세끼 다 안 합니다. 아침 안하고요 오후 4시에 퇴근해요, 거의 해 놓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 합당하게 해 주려면 응시자격을 좀 낮춰서 조리사자격증 말고, 지휘관들에게 위임시켜 주세요. 일반 조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리 능력을 갖췄는가 이것을 가지고 해 주셔야 조리사를 뽑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연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기본피복 사업과 관련돼서요.

이게 수요를 산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지요. 그렇지요? 체격도 다 다르고 발 사이즈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편성과 집행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미집행 규모가 2001년도에 약 100억 정도에서 23년에 600억, 24년에 350억, 좀 더 상회했습니다. 물론 비율로 따지자면 10%,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액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급식비 인상하는데, 2000원 올리는데 얼마나 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23년·24년도를 보면 600억·350억, 과거에 맞춰 봤을 때 좀 과다 규모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미집행액도 예산편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식비 연료비 공공요금 배상금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밀하게 산정해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저는 급식만 하고 이것은 안 하는 줄 알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기본피복 사업 관련해서요, 21년에는 불용액이 2.9%, 22년에는 2.2%, 23년에 5.3%로 증가했거든요. 불용액은 증가했는데 편성은 공군이 21년에 11%였는데 22년에 12%, 23년에 14%입니다. 계속 편성은 증가하는데 불용액도 계속 증가합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공군들이 어떻게 피복비 운영하는지, 특히 조종사 피복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정말 실제 검수해 보십시오. 당시에 맞춰 놓고 디자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도 입지 않고 현물로 갖고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군의 피복은 특별히 확인을 하시고 정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지금까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13쪽입니다.

연번 13번과 14번은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에 관한 부분으로 2건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3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의무시설개선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강화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의무시설개선이고요.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2024년 의무시설개선사업 중에 집행률 75% 이하를 기록하는 사업들이 6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적사항에 의하면 공통 집행부진 사유로는 설계 변경, 계약 지연 등에 따른 계획 및 집행상의 관리 미흡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의무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설계 변경 등을 최소화하고 계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연번 14번, 시정요구명은 긴급공고 지양 등을 통한 경쟁계약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보건복지지원입니다.

이것은 내역사업 중에 양성평등정책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일반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지적입니다.

국방부는 관련 사업에서 총 4건의 연구 중 3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고요, 그 수의계약된 3건 중 2건은 일반공고가 아닌 긴급공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양성평등정책 지원사업 일반연구 계약 추진에 있어서 긴급공고 방식이 아닌 일반공고 방식으로 조달공고를 해서 경쟁계약을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2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적사항들을 보면 궁금해지는 것이 왜 긴급공고를 했을까 답변 좀 해 줄 수 있나요?

긴급공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입찰도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이고, 긴급공고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던 일들이 갑자기 필요해 가지고 생겨서 한 것 아니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그러면 무조건 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앞으로도 이런 긴급공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 국장 없어요?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입니다.

○임종득 위원 왜 갑자기 이 긴급공고 방식으로 했어요?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2억 3000만 원 미만의 금액은 긴급공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빨리 서두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처럼 경쟁계약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모두 일반공고로 전환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이것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유균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의계약할 수 있어서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정책 지원이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각군 양성평등정책 활동,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이에요. 긴급하지 않아요.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면, 성 인지력 교육이다 그러면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경쟁계약을 해서 해야지 긴급하게 해서 성 인지력 교육시키면 긴급하게 공고받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은 질적인 향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그래서 저희가 시정사항을 받아들여서 올해부터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고하였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저도 지적사항이라, 1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6건의 의무시설개선사업과 관련돼서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저조하고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22년·23년에. 그리고 또 23년 결산에서도 시정요구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집행 부진 사유 때문에 못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는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집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뒤에도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의무시설, 예비군시설, 교육훈련시설 이 부분들이 시설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통제해서 하다 보니 대관 협의가 지연된다거나 연차를 너무 짧게 잡는다거나 설계 변경이 잦다거나 하는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이 식별이 돼서 그 부분을 같이 살펴서 보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15쪽 연번 15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미편성된 정비장비 신규사업 추진 지양 등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정비장비사업이고요.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24년도 정비장비 중 예산안 편성 시와 집행 시 간의 장비를 비교해 보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시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추진했다는 지적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또 다른 일부 장비 33건에 대해서는 예정된 장비 획득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두 가지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미편성된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면밀한 시장조사 등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비가 적시에 획득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다음 15번부터 18번까지 4건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연번 16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국외정비의 국내정비로 전환 노력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정밀측정장비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연도별로 정밀측정장비의 해외정비 비율이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외정비를 국내정비로 전환한 현황을 보면 그 건수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하단에 보시면, 정밀측정장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정비로 전환하는 데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정비 체계를 국외 의존에서 국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연번 17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TMO 수송지원 위법·불법 사용 근절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수송활동사업이고요.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수송사령부 산하 TMO 불법 사용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24년도에는 이전과 비교해서 약 2배가량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TMO 목적·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서 향후 TMO

수송지원의 위법·불법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 자료 18쪽 연번 18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을 보시면요, 예산에 미편성된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사업명을 보시면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이 사업의 24년도 예산액은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용을 통해서 209억을 해서 소형자폭드론 총 100대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소형자폭드론 획득을 위해 사용된 이·전용 규모는 204억이 넘고,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소형자폭드론 구매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예산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세출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집행방식 등에 대해 국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15번부터 18번까지 4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다만 18번 안건에 대해서는 주의로 건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18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데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자체가 3억이었다가 이·전용 등을 통해서 209억 2000만 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가 전체는 잘 모르겠지만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부승찬 위원**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게 주의가 아니고요 저는 감사원감사 요구를 하고 싶어요.

이것은 완전히 판을 깨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어떤 심의도 없이,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3억인데 한 10% 혹은 20% 정도 증액이 됐다, 그러면 오케이. 그 정도는 제가 주의를 수용을 하지만 이것은 전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를 거치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봐주면 앞으로는 마음대로 이·전용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불법적인 사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은 감사원감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 저희 의원실에서 시정으로 갔는데 저는 감사원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그냥 묵과하고 주의 선에서 끝낸다? 그러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헌법이 보장한 권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사원감사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요청을 드립니다. 아니면 고발조치를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 차관님, 이것을 어떻게 소명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국방위 삼사 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만 하는데 이게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부승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도 부임을 해서 이 관련되는 내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드론,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드론은 표적을 볼 수 있는 정찰 드론 정도였고 자폭형 드론은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력화 프로세스가 위낙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전장 변화나 상황 변화를 못 따라가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드론 기술을 익히고 이것을 전장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시급하게 관련되는 유사 예산인 교탄 등의 예산을 활용을 해서 시급하게 우선 전력으로 보강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정책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크게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전장 양상이나 시대적인 변화를 기존의 프로세스가 담지 못하는 불가피성으로 했다 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지금 차관님은 예비비 사용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한 사안입니다. 그런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했으면 예비비를 통해서……

예비비 규모가 2024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또 사용 못 한 게 얼마였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저희가 예비비를 직접 갖고 있지는 않고요.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국가 예비비가 따로 있고요.

○**부승찬 위원** 아니, 직접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정부 부처 중에 예비비를 직접 갖고 있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그게 아니고 국가예비비가 따로 기재부에 설정되어 있는 폭이 제가 알기로는 한 5조인가로 알고 있고요. 그때그때 소요가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승인해서 받는 것입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해서 받으면 되지요. 왜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을…… 이건 명확한 법 위반 상황 아니에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61조나 되는 국방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내역사업 중에 물량 증가나 신규 사업이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세부내역을 좀 들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실 집행 잔액들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승찬 위원** 아니, 그 재투자……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는 것은 그다음 단계라는 것을 말

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 신청을 하기까지는 좀 더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재정법이 왜 있고 그다음에 국회법이 왜 존재하고 헌법이 왜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다 위반한 것 아니예요?

아니, 300억인데 200억이 는 것도 아니고 3억에서 209억, 그리고 204억을 소형자폭드론 획득으로 다 써. 이것 어디를 납득을 해요? 이것은 감사원감사예요. 감사원감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게 어떤 결정, 정확히 저에게 전체회의 전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황희 위원** 아니면 이게 약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시정요구와 관련돼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요, 추후에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국방위 하지 말아야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을 안 하고……

○**소위원장 강대식** 좋습니다.

○**임종득 위원**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전용되는 사례들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1년에?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 심사 내용 중에도 이·전용해서 지적받은 경우들은 다수 발생합니다.

○**임종득 위원**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전용으로 집행된 금액이 1조 8000이에요, 1조 8000.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심한 이·전용 사례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건데 전체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만 달랑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전용되는 사례를 보면 어떤 사업 집행이 미진해서 그 예산으로 동일 항목 내의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목 자체를 수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 같은 경우는 탄약 유사사업 예산 목 중에서 새로운 목적이 발생하다 보니 전용해서 한 그런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년에 1조 8000억 원의 이·전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건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200억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전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 다 처벌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위원님, 이·전용 폭은 23년에 3000여억 원 그리고 24년에 한 5000여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용 조정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기존 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불가피한 예산, 예를 들어서 보상금, 배상금, 공공요금 이렇게 법정경비성 경비는 예측대로만 꼭 지불이 되지 않고 더 크게 증가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전용을 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용 조정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향점은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이 방만하게 안 하려고 하는 점은 있지만 이게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이나 저희들 국방부 예산집행지침상에서도 허용이 되는 제도だ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규모는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당연히 최소화시켜야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용을 하더라도 이게 목이 전혀 엉뚱한 곳에 쓰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전용할 때 세목 조정이랄지 비목 전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다 승인과 허가를 통해서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소형자폭드론 이게 말이 드론이지 사실은 탄이잖아요, 탄, 자폭하는 거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리고 변경된 내역들을 봐도 합포교육용탄약, 항공교육용탄약, 지상교육용탄약, 그러니까 육해공군의 탄약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용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그러면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목 안에서 전용이 됐지만 부승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을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기조실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절차와 규정이라는 틀은 저희가 최소한 지키면서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승찬 위원** 저요.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감사 요구를 해야겠어요. 보류에서 감사 요구로 다시 바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전용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천 배 증액되는 걸 국회…… 이것 교육탄도 아니에요. 이것 교육탄 세목에 맞아요? 교육탄이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교육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유사시에는 당연히 전투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출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거지요.

아니, 몇천 배가 이·전용이 됐어. 3억이…… 아까 24년도에 이·전용 얼마라고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5220여억 원입니다.

○**부승찬 위원** 5200억 중에 정확히는 이것 계산해 보면 54배 정도 올랐어요. 퍼센티지로 하면 몇 %예요? 몇천 %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5000억에 대한 것들을 이·전용한 내역 전부 뽑아 주세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예.

○**부승찬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5000억에서…… 이런 사례가 있냐고요, 이·전용이.

몇천 배, 몇천 %, 몇천 배가 아니고 54배이기는 한데 이렇게 이·전용한 것을, 국회 심의도 없이 한 것을 다 뽑아 주세요, 1000% 이상 중에.

아니, 좀 설명을 듣고 뭘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완전히 예산 체계, 국가재정법 체계 이런 것을 다 깨뜨리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납득이 돼요? 그냥 예산을 안 하더라도, 심의를 안 하더라도 과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차관님, 18번은 나중에라도 좀 더 부연설명을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것은 별도로 부 위원님이나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전문위원,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19쪽입니다.

자료 19쪽 연번 19번부터 연번 23번까지 5건은 군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 연번 19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첨단과학훈련장비에 대한 계약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사업명은 과학화훈련 사업이고요.

지적사항은 첨단과학훈련장비 내역사업은 집행률이 86%로 부진하였고 계약 지연, 사업 취소 등 여러 건이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첨단과학훈련장비사업에 대해 사전 검토와 단가 산정 및 계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연번 20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훈련장 시설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훈련장 시설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으로 2024년의 경우에 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 1사단은 집행률이 3.5%로 매우 저조해서 특별한 집행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훈련장 시설사업에 대하여 연례적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자료 21쪽, 연번 21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신규 사업 추진 시 국회 심의 준수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 부대훈련 및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육군 국제저격수경연대회 신규 추진 3억 5400만 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육군 국제과학화전투경연대회의 경우는 당초 편성액이 2억 원이었으나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8억 원을 집행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와 육군은 기존에 편성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과다하게 확대하여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향후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연번 22번, 시정요구명 단기복무장려금 예산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 간부확보장려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4년도 단기복무장려금은 초급장교 지원예산으로, 1인당 1200만 원씩입니다. 이는 군인 사법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즉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 60억 원을 편성해 두었는데 법상 근거 미비로 전액 불용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금 예산에 대한 근거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연번 23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충분한 정책 검토를 통한 학군사관후보생 선발방식 변경 필요입니다.

사업명을 보시면 인사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ROTT 선발 사업의 필기시험 폐지 이후 온라인 인성검사와 추가 선발 모집에 해당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제도 변경을 예고 없이 즉시 집행하고 운영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예산 목적 외 집행 문제를 방지하며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발 제도를 보완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19번부터 23번까지 5건에 대해서 시정 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다만 21번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 차관님, 단기복무 관련해 가지고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 요구했는데 제가 군인사법 냈다가 소위에서 통과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장교 획득률은 90%가 되는데 부사관 획득률은 40%대밖에 안 되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희 위원** 그런데 장교는 한 1200만 원 정도 장려금 주고 부사관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황희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장교는 면세가 되는데 부사관은 과세 대상이에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부니까 부사관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제가 그때는 졸업생,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한테도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저는 약간 국방부도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법안 발의한 상임위 위원 입장에서도 국방부 자체가 별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가 의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던 주 이유가 기재부에서 저희가 동의를 못 받아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재부의 동의를 받았고 26년도 예산안에도 다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법안만 통과시켜 주시면 이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이게 장려금 주는 게 맞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내년도까지는 장려금을 주되요 기본급을 인상시키세요, 전체적으로. 계속 용사들 봉급 올려 주니까 초급 간부는 어떡하냐 이러고 있잖아요. 지난번 차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완전 풍선 아니에요, 풍선? 풍선효과 아니에요? 여기 막으면 저쪽 튀어나오고 저기 막으면 저쪽 튀어나오고.

지금 진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군…… 저는 초급 간부뿐만 아니라 그냥 하사부터 4성 장군까지 봉급체계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려금들은 ‘군대 와 줘서 고마워’ 이게 아니라요 기본급을 한 20% 정도 상향하는 것들에 대한 진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해 보시지요. 계속 임시방편이잖아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차관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제가 대변인 하면서 정말 우리 차관님 능력…… 이게 진짜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걸로 봅니다. 그걸 위

해서 기재부와 싸울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사부터 4성 장군까지 기본 봉급체계를 인상하고 장려금 체계는 다 없애십시오. 그래서 여기 오면 고생은 하지만 최소한 생활하는 데는 문제없고 정말 좋은 직업으로서 만족도가 높은 직업으로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우리 차관님 계시는 동안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른 국가들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또 기타 정병제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의 기본 봉급체계를 한번 보시고요. 그냥 단기 장교 이렇게 특정 계급을 딱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장교 때는 이만큼 받고 4성 장군까지 올라가면 이만큼 받는다, 그래도 우리가 고생하는 만큼 국가가 이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을 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에 많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맨날 하면 얼마 올려 달라, 뭐 올려 달라, 우리 차관님 배포에 이게 짜증나지 않으세요? 이런 짜잘한 것 갖고 국회 오면 그럴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차관님, 제가 20번 훈련장시설 관련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 팀에서 논의되지는 않는데 20번 훈련장 관련해서 유사한 건이 뭐냐면 24번 건설보상비 과다 편성, 27번 동원훈련장시설 현대화 사업이랑 같이 묶어서 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두 국방시설 건설·유지보수 사업인데요. 이게 부실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다 못 썼다는 지적이에요, 20번, 24번, 27번이. 그런데 문제는 지난 추경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급하게 추경 올리면서요 죄다 시설 건설 예산만, 특히 집행이 안 되는 시설 건설 예산을 2227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 국방시설 관련해서 추경이라든지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는 부승찬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 봉급을 올리는 건 사실은 공무원 보수규정이랑 다 연동이 돼 있어 아마 어렵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기사에 난 것 보셨습니까? 은행원들 부장급으로만 나가도 나갈 때 성과급 10억씩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연금하고 보수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생각할 때 중간에 자꾸 단기 장교들 나가니까 5년 근무하고 나가면 얼마, 10년 근무하면 얼마, 나갈 때 특별보상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하고 나면 나중에 나갈 때 우리 군인들 30년 근무하고 나가서 집 못 사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사는 데가 다 어렵니까? 의정부, 남양주, 저기 밑에 수지, 일산……

○**부승찬 위원** 수지 좋아요. 왜 그러세요?

○**강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서울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근거지가 그거 인데 죄다 경기 외곽으로 내려가서 살고 제일 좋아하는 데가 계룡대 지역에 살잖아요. 슬프지 않습니까? 재산 많이 가진 사람들은 투기했다고 진급 안 시켜 주고 결국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집 하나 살 수 있는 여건을 못 마련하고 나가는데 1억 받잖아요, 1억. 저희 1억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연금의 50%는 본인이 부담하는데도 공짜로 받는 줄 알고 다 국민들은 지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갈 때 5년, 10년 이상 근무하면 특별보상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단기복무장려금 관련해서 60억 원이 편성됐다가 전액 불용됐다,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걸 얻기 위해서 기재부에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고 요구를 하고 또 우리 국회 와서도 죽는 소리하면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전체 불용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게 학사장교, 예를 들어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하는 친구들도 다 그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예산 집행을 하나도 못 해서 그때는 기재부 동의를 못 받아서 법 통과가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이제……

○임종득 위원 법 통과가 안 된 걸 예산에 반영을 했던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금년도에 그래서 금년 중에 이 법안 통과를 해야 내년에 반영한 예산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황희 위원 제가 법안 발의를 했는데 안 됐어.

○임종득 위원 우리 소위에서 막은 거예요? 아닌데.

○소위원장 강대식 차관님, 25년도에 이 예산 반영을 했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예, 지금 60억이 딱 500명 수준, 그러니까 1200만 원을 500명한테 줄 수 있다고 보고 편성을 한 건데……

○소위원장 강대식 2025년도에 했냐고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했다고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했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기재부하고 법 개정 통과의 추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했는데 결국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소위원장 강대식 그때 당시에 법 통과를 가정을 해서 애결복결해 가지고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결국 통과는 못 했고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못 했고 학사 졸업,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학사장교가 된 친구를 한 500명 정도 저희가 대략 갖고 있는데 그게 1200만 원 곱해 보면 아시겠지만 60억 정도입니다. 그게 불용이 된 겁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게 불용된 500명 잡고 있었던 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많이 도와주셔서 졸업생 이외의 학사장교나 또 RNTC 그리고 민간부사관 여기까지는 확대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다 협의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리고 여기 보면 부사관 복무지원금하고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이라든지 지금 대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추이를 보면. 내가 지금 그림을 준비 안

해 왔는데 연도별로 2020년부터 이렇게 죽 보면 지원금 지급 현황이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그것 알고 있지요, 줄어드는?

○**국방부차관 이두희**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줄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예산 집행 또한 감소 추세에 있어요. 계속 단기복무장교 혜택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 예산 집행 또한 감소 추이, 2020년도부터 2024년도 비교해 보면 또 희한하게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산은 또 매년 증액되고 있고. 단기복무 장려금은 최근 5년간 4배 정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들 획득하는 것은 계속 저조하게 가는데 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장교든 부사관이든 지원을 하는 것이 장려금 줬다고 해서 바로 확 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인 군인 직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 시대 상황을 담는 문제, 종합적인 처우의 문제, 장래에 대한 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 있어서 참 안타까운……

○**소위원장 강대식** 그 대답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이거 그냥 단가 증액만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느 천년에 가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그 일은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좀 전에도 우리 부 위원님이나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궤지만 전체적인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는 원하는 인원을 획득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정말 근본적으로 대책을 머리를 맞대서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모르겠네요, 제가 얇은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이게 만루홈런 같은 단일 정책을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발 좀 도와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하여튼 또 형평성의 원칙도 정해져야 될 겁니다. 불공평한 처우로 인해 가지고 인재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자원을 획득하지 못한다 이것도 하나의 부작용의 일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님들, 21번 정부 측에서 주의를 원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24번부터 27번까지는 군사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서 4건을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연번 24번입니다.

시정요구명 비록 설정 오류에 따른 예산 과다 편성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관사 및 간부숙소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국방부는 대관협의 및 신축 내역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대관협의 목적의 예산 비목을 건설보상비로 편성했다는 지적인데요. 당초에 대관협의 목적은 기본설계비 비목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입니다. 관사 및 간부숙소 관련 14개 사업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소요 및 예산 비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25쪽 연번 25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공공요금 예산의 적정 편성을 통한 과도한 이·전용 발생 지양 필요입니다. 사업명 공공요금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4년도 공공요금 이·전용을 통해 1688억 원, 총 7000억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과소한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액의 31%에 달하는 금액을 이·전용을 통해 집행하였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과도한 공공요금 이·전용을 통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자료 26쪽입니다.

연번 26번입니다.

시정요구명 계룡대 주전력·예비전력 변전소 분리 필요 사항입니다.

사업명을 보시면 일반지원시설 사업이고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계룡대는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전력공급체계를 이중화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24년 9월에 36분간 정전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그 기준에 따라 계룡대와 같은 군 핵심시설의 예비전력이 주전력과는 다른 경로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설비에 대한 정상 작동 여건을 확보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 27쪽입니다.

연번 27번 시정요구명 동원훈련장 현대화사업 관리강화 관련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업명 예비군훈련시설 확보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24년도에 전국 64개소 동원훈련장 중에서 생활관 개선 사업은 13곳, 안보교육관 및 식당 개선 사업은 2곳이 모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의 일정 지역에 따른 과도한 사고이월 발생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현재의 사업집행 관리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 유형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24번부터 27번까지 4건에 대해서 지적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다만 26번 계룡대 주전력·예비전력 변전소 분리 필요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24번 아까 말씀드린 국방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한구역 내에 우리가 군사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면 자자체하고 국토교통부와 대관협의 그다음에 보전부담금 합의 등의 절차가 있어서 일부 이것의 비목이 대관협의 목적의 예산 비목, 420-01 기본설계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육군이 이걸 편성하면서 잘못 편성했어요. 건설보상비 410-00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발생한 겁니다.

육군예산처장님 나왔지요? 예산처장님, 이거 똑바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편성해야 돼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를 기본설계비로 사용하지 않고 건설보상비 이렇게 비목을 잘못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똑바로 하시라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계룡대 이건 됐고요. 연합 C4I 체계는 안 하셨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계룡대의 주전력·예비전력 변전소 분리, 아주 상식적인 내용을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력공급체계 이중화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군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는데 계룡대는 이게, 최초에 89년도에 계룡대를 건설할 때에 잘못돼 있는데 그때 변전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배경은 확인은 안 됐는데 다시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것은 유사시 대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우선적으로 조치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전소 한쪽이 문제가 되면 바로 그냥 전력 공급 자체가 끊기는 거고 전력이 끊겼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 예비전력을 한 변전소에서 쓰고 있다, 이게 만약에 많다 그러면 판단해 보시고 파악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은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연번 26번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연번 28번입니다. 28번부터 31번까지는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그리고 국방행정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4건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8번, 시정요구명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 연례적 이전용 재검토 필요 사항입니다. 사업명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보시면요 연합지휘통신체계는 한미 간에 공동 사용 중인 연합 C4I 체계 운영 비용에 관한 한국 측 분담금 내용입니다. 24년도 동 사업 구조개선을 위해서 당초 예산 238억에서 73억을 전액 이용해서 이렇게 충당했습니다. 지적사항이 그렇고요.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요 국방부는 연례적 이전용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는 현 방식을 주한미군사와 협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예산 충당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자료 29쪽입니다.

연번 29번 시정요구명 재외공관 주재무관 포상급 집행 근거의 법제화 필요 사항입니다. 사업명 무관부 활동 사업입니다.

지적 사항을 보시면요 국방부는 무관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법령이 아닌 훈령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어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요 국방부는 무관활동 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하려는 포상금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 쪽, 30쪽입니다.

연번 30번 시정요구명 타부처와의 공동 사업 진행 시 예산 소관과 계약 주체 일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업명 국방행사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국방부는 외교부와 국제회의(제2차 REAIM 회의) 공동개최를 하면서 계약을 국방부 명의로 체결하지 않고도 그 대금을 국방부 예산으로 25억을 집행하여 정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출원인행위 없는 예산 집행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한 집행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적사항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다부처 공동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성을 확보해서 예산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 31쪽입니다.

연번 31번입니다. 시정요구명 대규모 이용액 발생에 따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군 배상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일반배상금이 2024년도에 국방부 이·전용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로 118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 동그라미 하단에 보시면 24년 예산을 170억 원으로 과소편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국방부는 군 배상금에 대하여 관련 소송 경과 및 기존 피해자 통계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연례적인 이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4건 모두 지적 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28번 연합 C4I 사용하는 거는 현재 연례적으로 미군들과 같이 지불하는 건데 이번에 임차료 비목, 210-07로 당해연도 이용 집행했는데요. 24년에는 이게 2300프로그램에서 73억 1400만 원 전용했습니다. 2300프로그램은 전투 준비태세 확립, 전투 지원능력 그다음에 군 재해·재난 대응 복구를 위한 재난 대비태세 확립 및 적극적인 대민 업무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합 C4I 시스템은 5100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틀렸어요. 물론 이렇게 프로그램을 달리 사용한 부분은 아마 특별한 목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썼는데 금년도에 쓴 임차료 목록은 사실은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국가재정법에는 되도록이면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서 이·전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례적으로 매번 이렇게 이·전용을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당겨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한미군사랑 협의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협의하시고요.

예산 충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좀 이·전용을 하더라도 5100프로그램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 5100프로그램 하세요, 기조실장님.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차관님, 연번 31번 군 배상금 이·전용 금액이 1180억으로 국방부 이·전용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강대식** 당초 예산편성 대비 약 한 7배, 6.7배 정도 되는데 배정된 예산 대비 집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767%로 최초 편성보다 약 한 7.6배가량이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배상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잘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가령 5·18 관련된 거라든지 삼청교육대, 4·3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측 못했던 수요들이 불거지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령 올해도 또 이런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공군 오폭사고 이런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좀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도 올해도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이·전용해야 되지요, 올해도 돈 없으면? 올해도 할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할 거 아닙니까? 생기면 하는데 그걸 보면 10억 이상의 금액을 자체 이용한 17개 사업을 보면 전부 다 어디에 다 논리가 있는지 차관님 알고 계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장병 복지 및 장비 정비에 사용할 예산을 전부 다 이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장님, 맞아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예, 배상금에 충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타 프로그램의 잔액들을 좀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 목적을 충당하고 나서 잔액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긁어 모아서 사실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개념을……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올 예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전용을 많이 한 그런 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대책을 해 가지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잔액을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170 억밖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이 배상금 자체를 현실화하는 게 가장 맞고 정확한 처방인데 사실 200억 정도로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배상금이라는 성격상 언제 어떻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올지 그 소요 예측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만 갖고 있어라라는 게 약간 재정 당국의 입장이어서 저희들도 조금은 그건 과소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보면 일반배상금 자체를 다른 사업 예산을 이용해 충당할 수 있다라는, 이거 잘못된 관례를 계속 고착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필요는 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래서 관리 감독을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하시고, 구체적으로 추계분석하는 이런 체계를 마련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기재부에다가 미리 예산을 건의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혹시 2024년도에 10억 이상의 금액을 자체 이용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하고 예산불용 사유를 좀 분석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2쪽입니다.

자료 32쪽, 연번 32번인데요. 32번부터 연번 39번까지 8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총괄적 사업입니다. 2개 이상 부처에 관련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국방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일반회계 총괄로 둑어 보았습니다.

연번 32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이·전용 규모 축소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강구 필요 내용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총괄이고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방부 2024년도 이·전용액이 5222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해 면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33쪽, 연번 33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을 보시면 각군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 초과집행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총괄 부분이고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각군의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면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 건당 500

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재정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자료 34쪽입니다.

연번 34번 시정요구명 관서운영경비 법인카드의 체크카드 비중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총괄 부분이고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국방부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 완화를 위해 체크카드의 발급 건수 및 사용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 자료, 35쪽입니다.

연번 35번 시정요구명 군 드론 관련 제도정비 필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총괄 부분이고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국방 영역에서 첫 번째, 드론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동그라미 두 번째, 드론 전문 운용인력 확보·양성에 관한 실적이 미흡하다는 내용 세 번째 동그라미, 드론 등록·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도 이에 대응해서 국방부는 드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임무·기능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 기준을 정립하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드론 전문인력의 양성 제도와 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등록해야 되는 드론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하라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 자료, 36쪽입니다.

연번 36번 시정요구명을 보시면요 군 드론에 대해서 보험 가입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역시 총괄이고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2024년도에 군차량및드론보험업무훈령을 개정했는데요. 24년도 개정 내용 중에 소형 자폭드론 도입과 함께 지휘관 판단 하에 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개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판단 가능한 지휘관의 범위와 판단 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과도한 재량을 허용할 우려가 있고 이는 보험 가입 후 조정 운행하라는 원칙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 군 차량 및 드론 훈령 규정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하고 보험 미가입 드론 운영 시 피해배상 대책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드론 등록과 운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류별 적정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 자료 37쪽, 연번 37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초빙강사 지급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 역시 총괄이고요.

지적사항입니다. 국방부 및 각 군별로 초빙강사료의 지급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초빙강사 지급 실태를 확인하

여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초빙강사료 오집행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방부 감사 시 확인을 통해 시정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그다음 자료, 38쪽입니다.

연번 38번입니다. 시정요구명 민간근로자에 관한 퇴직급여 적립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방부 민간근로자는 관련 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제대 중에서 최소 5개소가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그리고 11개 기관은 법정 최소적립금 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고용부담금에 포함된 퇴직부담금을 각 민간근로자의 퇴직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적립 미이행한 기관과 제대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최소적립 의무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다음 자료, 39쪽입니다.

연번 39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우크라이나 군수품 지원 내역 조사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군사장비를 무상대여 형식으로 지원한 바 있는데 회계상으로 불용·재산삭감 처리를 완료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상 제공이 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해당 군수품 지원이 감행되었는지 자체조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32번부터 39번까지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다만 32번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주의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관사운영경비 카드, 범인카드 이거 신용카드로 쓰면 수수료율이 영세사업자들이 0.4에서 1.45고 체크카드 0.15에서 1.15니까요. 이게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체크카드로 전환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아실 거고.

그다음에 관서운영경비 500만 원 이하만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관을 통해서 쓰는 건 5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지금 자꾸 출납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특히 차장님, 제가 자꾸 죄송한데 육군에 16건이나 있어 가지고…… 지금 500만 원 이상 사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일반수용비 7건, 급식비 18건, 25건이 식별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초빙강사료입니다. 24회계연도 중에 초빙강사료를 보니까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강사수당, 차관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문제점을 보니까, 각 부대별로 기준이 가나다라급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방부하고 해군, 공

군, 해병대는 1시간 플러스 있는 시간만큼 계속 줍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 교육을 7시간 하면 국방부하고 해공군은 하루에 강의료 107만 원을 주고 그러는데 육군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 2시간 이상 안 줍니다. 그래서 35만 원 지급하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외부강사들 섭외가 육군은 안 됩니다. 해군, 공군 가면 107만 원 받는데 육군 가면 35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러한 기준이 없이 운영하니까 국방예산운용지침에 대해서 이걸 좀 명시해 달라. 그리고 강사료 해·공군들만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강사 오시는 분들을 꺾으라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 초빙강사료가 내부 인력이 부재하니까 이 인원들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고 있어요. 국방부 편성지침에 보면 고용계약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임금을 고정 지급하는 경우 일용임금(110-04)으로 편성한다, 이것은 건당 5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공군은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54개 지역 79개 부대에 찾아가는 보안전문교육 추진을 위해서 23년 12월부터 이미 회계연도 개시도 안 했는데 예비역 교관 4명을 선정해서 구두로 계약을 해서 개시 전에 예산집행을 위한 원인행위, 즉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인당 예비역 대령 1명은 14번 해서 468만 원, 준위 16번 해서 522만 원, 또 한 준위 552만 원, 또 한 준위 532만 원. 이것 국고금관리법 52조에 의거해서 관서운영경비 계약에 의한 일용임금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넘는 법규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사료를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고 강사료가 용역이 되지 않도록 차관님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3년간 감사를 실시했는데 초빙강사료 적발은 3건밖에 안 됩니다. 24년 국직부대 종합감사에서 군비통제검증단 시정, 지휘통신사령부 시정, 육군종합감사 육군본부 시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때는 각 군 본부, 국방부 다 해서 이것 용역비 잘못된 것 있는지 찾아서 시정해 주시고요. 강사료가 이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드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방부가 방위력개선비로 도입한 드론이 한 4500~5000여 대 있어요? 현황 파악 국방부에서 하고 있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현황은 4762대입니다.

○**부승찬 위원** 4762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이게 보면 유엔사 관리규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항공안전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에 대한 명확한…… 동일한 용어로 써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드론과 관련된 법들이 난무하는데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쓸 때는 이걸로 통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대

체…… 그냥 kg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도 지금 각 제대별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침이나 관리규정 이런 것도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여기 지적사항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각 부대별로 내가 이런 드론을 사기 때문에 드론 관련 SOP도 그렇고 교범도 별도로 운용되는, 4700대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굳이 각 사단이면 사단, 군단이면 군단, 혹은 여단이면 여단 이런 지휘체계 라인에서 완전 빠져 있거든요, 드론과 관련되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참에 드론사를 지적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드론사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국가급·전구급 무인기 같은 경우는 전략사나 이런 데서 운용을 하지요? 합참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그 급에 맞는 데서 운용을 하는데 드론사가 사령부급에서 소형 드론을 운용하는 데가 있나요? 다른 국가.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각 제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아직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데 각 제대별로 드론부대를 다 갖고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령부급에서 드론을 운용하게 되면 전시연합지휘체계에서의 작전계획 같은 게 다 반영이 되어 있나요, 드론사가? 평시는 어떤 작전을 하고 전시에는 어떤 작전을 하고 이런 게 다 되어 있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가 작계를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지는 못했는데 운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운용계획은 수립됐는데 전시작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 되어 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부승찬 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국방부차관 이두희** 운용 개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을 연합사령관이 오케이를 했나요? 승인을 해주나요? 합의가 됐나요, 연합사 차원에서 미 측과?

○**국방부차관 이두희** 연합사령관은 구성군을 통제를 하는데 여기 있는 전력들이 각 구성군으로 제공이 됩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론사를 둘 필요도 없는 것을 옥상옥을 뒤서 운용을 하느냐고요, 그것도 병역 모자르다고 허리 다 부러지고 있는 데서.

지금 한 450명 되나요, 아니면 그냥 150명, 200명 수준인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병력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밝히기는 좀……

○**부승찬 위원** 이런 부분도 드론체계를 정립할 때 같이 좀 해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시에 드론을 운용하는데 지금 긴급하게 드론을 쓰고 있어. 그러면 드론사에다 전화하고 드론사에서 ‘드론 보내 줄게’ 해서 드론사가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드론사는 연합사·지구사, 지상작전에 관련된 건 지구사, 그다음에 해구사·공구사와 별도의 협조를 다 하는 건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각 작전체대에 두면 그냥 지금 나와 있는 루틴대로 가면 되는 것을 별도의 아무 쓸모없는 드론사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작전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러냐고요.

그것도 드론과 관련된 군사용 드론에 대한 통일성이랑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연번 32번 이·전용 규모 축소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강구 필요에서 정부 측 의견은 주의로 좀 해 달라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은 자료 40쪽입니다.

연번 40번부터 44번까지 5건은 2개의 특별회계와 2개의 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0쪽 연번 40번입니다.

시정요구명 정화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연도별 집행률이 2024년도에는 46.2%로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기지별로 설계 및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률 저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41쪽 연번 41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대관협의 절차 이행 소홀에 따른 사업지연 주의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부대개편 7차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17사단의 경우 각 사업별로 95% 이상을 이·전용, 조정을 통해 감액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부대개편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관협의 등 규정상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사업 승인 지연 및 예산집행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42쪽입니다.

연번 42번 시정요구명 운용수익률 상향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사업명 군인연금기금 기타재산 이자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군인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24년도 4.7%로 전년 대비 3%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을 상향하기 위한 자산운용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자료 43쪽입니다.

연번 43번, 시정요구명 군 관사 장기 미퇴거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군인복지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관사퇴거 지연에 따른 각 군별 퇴거지연 관리비 징수 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의 징수 건수가 전체 징수 건수 증가분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육군의 관사 퇴거 지연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장기 관사 퇴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자료 44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연번 44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적정 가산금리 책정과 협약은행 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군인복지기금에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금을 통해서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COFIX+1.55% 가산금리로 재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2024년 11월 기준에 우리나라 시중은행 평균 순가산금리가 1.0%니까 이것보다 더 높게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 사업의 가산금리가 시중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협약은행 추가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연번 40번부터 5건에 대해서 지적 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다만 44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견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일단 42번 말씀드린는데 4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나중에 문제 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기금 운용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43번은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동

빙고아파트 입주금 지금 3000만 원인가요, 32평이? 하여튼 대략 한 5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강선영 위원** 32평 입주금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다가 전역하면 나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32평 전세 얻으려면 아마 6억~10억은 줘야 되니까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퇴거비를 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분들도 가슴 아프지만 현역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퇴거비를 많이 부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아까와 동일하지만 지금 군 간부들 전역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것을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내면 여기 월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끝까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도래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나가…… 그래야 현역들이 살지요. 예전에 아시지 않습니까? 짐질방에서 현역 간부들이 묵으면서 국방부·합참 근무하는 것.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긴 하나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좋을지, 그렇게 퇴거 안 하는 분들 전역 전에 어딘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전역 몇 개월 전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44번입니다. 지금 이 가산금리와 관련되어서 2024년에 1.5%로 인하를 했는데도 시중 평균금리에 비해서 훨씬 높지요? 시중 평균금리가 1.07%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시중 평균금리보다는 낮습니다.

1.07은 개인이 여러 가지 혜택을, 여러 가지 점수를 고려했을 때 최대한 다 받았을 때 그겁니다. 평균이 아닙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중 평균금리보다 더 낮출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여러 가지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군 간부는 가산금리 포함해서 4.14이고 민간 평균은 4.28인데 그래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지금 두 개 은행만 협약은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독점이 되어 가지고 금리 자체를 낮추는 데 장애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협약은행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쟁을 좀 시키면 금리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검토를 해 봤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좀더 금리를, 간부들이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44번에 정부 측 의견이 제도개선인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국방부 소관, 보류됐던 연번 18번 사안은 정회 시에 국방부 담당께서 부승찬 위원님한테 부연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오늘 본회의가 약 2시에 시작해서 한 3시 반 정도까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후에 18번 이야기를 부연설명을 듣고 바로 방사청 시작하기 전에 의결을 하고 방사청 결산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3시 30분경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5인)

장대식 장선영 부승찬 임종득 황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지능정보화정책관 염주성

법무관리관 홍창식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근혜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

보건복지관 김은성

전력정책국장 원종대

국방정보본부

무관운영과장 김현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예산회계팀장 장정예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부장 김종석

육군본부

예산차장 차종희

해군본부

예산차장 이일남

공군본부

예산차장 김은희

해병대사령부

예산처장 유정규